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도희재 의원 외 6인

2. 제정이유

○ 지역문화 및 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○ 지역 어린이들이 합창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성을 키우고 협동심을 배우며 도전하고 성취하는 합창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지역의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명칭 및 기능(안 제2조~제3조)
○ 어린이합창단의 구성(안 제4조)
○ 단장 등의 직무 및 단원 선발(안 제5조~제6조)
○ 위촉과 임기 및 위촉 해제(안 제7조~제8조)
○ 단원의 임무(제 9조)
○ 운영위원회(안 제10조)
○ 경비지원 (안 제11조)
○ 지도·감독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다. 기 타 : 조례안예고 (2018. 8. 29. ~ 9. 2. 5일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의 설치 근거를

마련하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의 기능과 구성,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, 단장 및 부단장, 지휘자 등의 위촉 및 임기,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역의 문화·예술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